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기술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회당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의 연장 절차 및 조건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허가만료일 90일 이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2. 시험·연구계획서
3. 별지 제16의2호서식의 시험·연구 외 사용금지 확인서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가 발행한 다음 각 목에 관한 확인 보고서.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가목에 따른 검사방법 또는 나목에 따른 제동성능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가.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 나. 제26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누적 주행거리
 - 다. 제73조 및 별표 15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 1) 동일성 확인
- 2) 주행장치
- 3) 조종장치
- 4) 조향장치
- 5) 제동장치

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제동성능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제출서류가 적합한 경우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2항 중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최초, 연장)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 행허가는 20일)
신청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사항	차종 차대번호 운행목적 운행기간	차명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기존 허가번호(연장신청시) × (mm)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연구 계획서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 연장의 경우 가. 시험·연구계획서 나. 별지제16의2호서식의 시험·연구 외 사용금지 확인서 다. 성능시험대행자가 발행한 아래 사항에 관한 확인 보고서 1)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2) 제26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누적 주행거리 3) 제73조 및 별표 15에 따른 자동차 검사항목 중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제동 성능	수수료 1대에 대하여 1,800원. 다만,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

유의사항

-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신청·차대번호 표기·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 2년 이내(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 5년 이내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시험·연구 외 사용금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사항	차종	차명	기존 허가번호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운행목적	× (mm)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5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연장 신청함에 있어 상기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신청인 (인)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u>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허가만료일 90 일 이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u>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u> 2. <u>시험·연구계획서</u> 3. <u>별지 제16의2호서식의 시험 ·연구 외 사용금지 확인서</u> 4. <u>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 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 능시험대행자”라 한다)가 발 행한 다음 각 목에 관한 확인 보고서.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가 목에 따른 검사방법 또는 나 목에 따른 제동성능 평가방법 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별도로 정 할 수 있다.</u>

<신 설>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① (생략)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별

가.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나. 제26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누적 주행거리

다. 제73조 및 별표 15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 1) 동일성 확인
- 2) 주행장치
- 3) 조종장치
- 4) 조향장치
- 5) 제동장치

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제동성능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제출서류가 적합한 경우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성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능시험대행자-----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